코미코 공정거래법 준수 규정

제정: 2023년 11월

공정한 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이며, 거래 상대방과의 상생을 위해 윤리와 법규 준수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에 임직원 여러분께 아래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반드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기본원칙

- 1)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나 사내 규정 등을 위반 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 (인사/구매)에 사전에 보고·문의 등을 통해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본인 또는 타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실 또는 위반 소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 (인사/구매) 에 알려야 한다.
- 3) 임직원은 법령과 규정에 위반되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위와 같은 지시의 이행을 강요 받을 때에는 즉시 이를 윤리경영센터에 제보 하여야 한다.
- 4) 각 부서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고, 준법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모든 임직원의 본 규정 준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6) 본 규정을 위반할 시 내부 상벌 규정에 따른다.

공정거래법 규정

•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행동 규정

- 1)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다.
- 2)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만을 거래조건, 서비스 등 차별하여 거래하지 않는다.
- 4)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부당지원 행위 관련 행동 규정

- 1) 당사와 거래를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거래 개시에 대한 대가로 해당 거래와 무관한 부당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2) 거래 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체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빌미로 거래 물량 축소,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3) 거래 사업자의 제품 등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불법적 금품을 제공받지 않는다.
- 4) 업체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5) 합리적 이유 없이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받지 않는다.

• 공급업체와의 거래 시 행동 규정

- 1) 공급업체 등이 다른 고객들과 사업 하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 공동개발 등 별도의 계약조건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계약 조건을 따른다.
- 2) 공급업체 등이 당사에 대한 기밀 또는 경쟁 관련 민감한 정보를 다른 고객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3) 공급업체들에게 다른 고객들의 기밀 또는 경쟁 관련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 4) 공통의 공급업체 등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다른 공급업체들과 논의하지 않는다.

하도급법 분야

• 하도급법 거래 행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 위탁을 한 행위
- :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자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 하도급법 행동 규정

- 1) 표준계약서가 아닌 양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법무부서 사전 검토를 거쳐 하도급법 위반소지(부당특약 등)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2)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상 규정에 맞게 지급 해야한다. (15일·60일 이내, 현금비율 유지)
- 3) 거래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거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4) 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술자료는 해당 요구서, 비밀유지계약 내용에 따라 유용·유출하지 않는다.
- 5) 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공정거래 법규

법령	주요내용	관련부서
공정거래법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 - 부당지원 행위, 통행세 금지 -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 -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 전부서
하도급법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부당한 특약의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선급금의 지급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 부당반품의 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구매,회계,자금부서 - 그 외 하도급 거래업체 협업하는 전 부서

본 규정은 대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코미코는 기본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경영진은 이러한 기대 수준을 임직원들에게 소통하고 기준에 부합해 행동하도록 노력합니다.